

※ 정관변경 신규 조문 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8조의2	<p>제8조의2 (주식 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「주식,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_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_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의2(주식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「주식,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제9조의2	<p>제9조의2 (이익배당,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1종 종류주식) ① ~ ⑧ (생략)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, 가산금액은 발행가액의 10%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률, 시장상황 및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의2 (이익배당,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1종 종류주식) ① ~ ⑧ (동일)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, 가산금액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0%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률, 시장상황 및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.</p>
제12조	<p>제12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2조(신주의 동등배당)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.</p>
제14조	<p>제14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~③ (생략)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.</p>	<p>제14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~③ (동일)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.</p>
제15조	<p>제15조 (신설)</p>	<p>제15조(주주명부 작성·비치) ① 회사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. ②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③ 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</p>

		<u>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</u>
제16조	제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회사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 ② 회사는 매년 3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	제16조(기준일) <u>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.</u> <u>②회사가 제1항의 날을 정한 때에는 그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u> ③ (삭제)
제17조	제17조(전환사채의 발행) ① ~ ③ (생략)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17조(전환사채의 발행) ① ~ ③ (동일) <u>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 <u>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한다.</u>
제20조	제20조(소집시기)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	제20조(소집시기) <u>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,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.</u>
제45조	제45조(감사의 선임)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	제45조(감사의 선임·해임)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한다.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
	<p>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</p> <p>④~⑤ (신설)</p>	<p>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p> <p>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3항·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
<p>제51조</p>	<p>제51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</p> <p>① 대표이사(사장)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대표이사(사장)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제51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</p> <p>① 대표이사(사장)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대표이사(사장)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(사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⑥ (동일)</p>
<p>제54조</p>	<p>제54조(이익배당)</p> <p>① ~ ② 생략</p> <p>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 생략</p>	<p>제54조(이익배당)</p> <p>① ~ ② 동일</p> <p>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 동일</p>
<p>제55조</p>	<p>제55조(중간배당)</p> <p>① ~ ③ 생략</p> <p>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</p>	<p>제55조(중간배당)</p> <p>① ~ ③ 동일</p> <p>④ (삭제)</p>

	<p>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(준비금의 자본전입, 주식배당, 전환사채의 전환청구,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⑤ 생략</p>	<p>⑤ 동일</p>
<p>부칙</p>	<p>(부칙 신설)</p>	<p>부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(감사 선임·해임에 관한 적용례)</p> <p>제45조 감사 선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하며, 감사 해임에 관한 신설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 규정에 의해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</p>